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3. 22.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69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4.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 나. 상정의결
  -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4.)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 나. 주요내용
  -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 체육진흥협의회위원의 임기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체육진흥협의회회의의 등(안 제7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참조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2. 1. 5. ~ 2022.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2020.12.8. 개정되었는 바 체육진흥협회의 설치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위임조례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한 바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sup>1)</sup>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판단되며 우리 관내에는 강남구체육회,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있음.

〈법률개정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p><b>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b>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p> <p>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b>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둔다.</u> &lt;개정 2020.12.8&gt;</p> <p>② 협의회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20.12.8&gt;</p>

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중에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다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입안기준><sup>2)</sup>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기능)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가 행정기관<sup>3)</sup>이나 합의제행정기관<sup>4)</sup>과 같은 고유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다른 조례의 <사례><sup>5)</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호 중 ‘활용’ 보다는 ‘지원’ 이 적절해 보이고 제3호는 <예시><sup>6)</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구성 및 운영)제1항 중 ‘체육회 회장’ 을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추천함으로써 각 호의 ‘자’ 는 각각 ‘사람’ 으로 규정하며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 위촉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해촉 권한도 당연히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위원장’ 을 ‘구청장’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자치법규 입안 기준>

-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법규가 위임 자치법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치법규라면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할 것임.

3) <사례> 법제처 직제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5)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6) <예시>

-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체육진흥 등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안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는 협의회 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나 유관기관과 협의·조정하는 협의회의 특성상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협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협의회는 다른 조례의 <사례><sup>7)</sup>를 보더라도 이러한 제척 등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

- 안 제7조(회의 등)제1항 중 ‘소속위원’은 ‘위원’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위원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으로 서면결의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이고, 서면결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화하여 <예시><sup>8)</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5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사례><sup>9)</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7) <사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8) <예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9)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69호

제안일자 : 2022.3.22.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며, 협의회 운영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위임 조례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히 표시(안 제1조)
- 협의회 기능 및 심의·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및 협의회 구성 위원의 정식 명칭에 맞추어 조문 수정(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 해촉 권한을 구청장으로 명시화(안 제5조)
- 협의회 운영 특성에 맞지 않은 조항 삭제(안 제6조)
- 서면결의 인정 범위 조정 및 조례 규정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 를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로 한다.

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관장한다” 를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용” 을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체육회 회장” 을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체육회의 회장” 을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남구청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을 “구청장” 으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를 안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안 제7조)제1항 중 “소속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u>활용에 관한 사항</u></li> <li>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u>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u></li> </ol> <p>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구청장, <u>체육회 회장</u>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학교체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li> </ol>	<p>제1조(목적) -----            -----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            -----            -----.</p> <p>제2조(기능) -----            -----            ----- <u>사항을 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안과 같음)</li> <li>2. -----  <u>지원</u>-----</li> <li>3. -----<u>체</u>  <u>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u></li> </ol> <p>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u>강남구체육회의 회장</u>-----            -----.</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안과 같음)</li> <li>2. -----</li> </ol>

자

3. 체육회 회장

4.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

5. · 6. (생략)

④ · ⑤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사람

3.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4.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 6. (원안과 같음)

④ · ⑤ (원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  
-----.

1. ~ 4. (원안과 같음)

<삭제>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생략)

제6조(회의 등) ① -----  
----- 위원 -----

-.

② (원안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원안과 같음)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원안 제8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남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뉴디자인국장
2. 학교체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남구체육회의 회장
4.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